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59 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서왕진·김준형·차규근

박은정・황운하・조 국

신장식 · 임호선 · 강경숙

김선민 · 이해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, 식당 등 소방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

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·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 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 임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②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복지시설 설치·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정적 조치의 집행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집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	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
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	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시・도지사는 기본계획 및
	연도별계획에 따른 복지시설
	설치・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
	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
	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
	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
	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